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15호

**광운대역세권(월계동 383-40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83-40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3-420호(2023.3.16.)로 열람 공고하고, 2024년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5.8.)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4-1308호(2024.07.25.)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결정하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95호(1996.7.13.)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5호(2007.1.11.)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16호(2017.11.16.)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52호(2018.11.1.) 결정(변경)된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I.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① 광운대역세권(월계동 383-40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광운대역세권 (월계동 383-40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월계동 383-40 일원	-	증) 5,187.0	5,187.0	-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광운대역세권 (월계동 383-40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면적 : 증)5,187㎡	◦광운대역세권의 공동주택 건립을 통해 노후된 주택지를 재정비함과 더불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제반환경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187.0	-	5,187.0	100.0	-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4,903.0	감) 4,903.0	-	-	-
	준주거지역	284.0	증) 4,903.0	5,187.0	100.0	-

■ 용도지역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노원구 월계동 383-40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903.0	503.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해당없음

다. 공공기여계획 결정 조서

■ 공공기여 기준

구분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383-40번지)	준주거지역(변경없음) (383-42번지)	합 계
기준용적률	250% 이하	360% 이하	-
면적	4,903㎡	284㎡	5,187㎡
기준용적률 (가중평균)	256.02% 이하		
계획용적률 (상한용적률)	502.61% 이하 (503.0% 이하)		
공공기여 기준	◦ 완화된 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 적용 - 용적률:123.30% 이상, 부지면적:1,272.40㎡ 이상		

※ 계획용적률 및 공공기여량은 결정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 시 변경 될 수 있음.

■ 공공기여 계획

구분	공공기여 계획	공공기여 기준
장기전세 주택 공급	◦ 장기전세주택 계획 -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 130.07% - 장기전세주택 환산부지면적 = 1,274.89㎡	◦ 장기전세주택 기준 -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 123.30% 이상 - 장기전세주택 환산부지면적 = 1,272.40㎡ 이상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2.6.20.)」에 의거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완화된 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적용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가.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신설	A	5,187.0	①	월계동 383-40번지 일원	5,187.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A-①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택법」 제2조 제13호 부대시설, 제14호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 계획

구분	용도지역	건폐율	비고
신설	준주거지역	60% 이하	-

2) 용적률 계획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신설	256.02 이하	503.00% 이하	준주거지역

■ 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건축계획
장기전세주택 공급		완화된 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 적용 (용적률:123.30% 이상, 부지면적:1,272.40㎡ 이상) ⇒ 법정 : 1,272.40㎡ 이상(123.30% 이상) < 계획 : 1,274.89㎡(130.07%)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 쉬운 구조” 또는 「주택법」 제38조에 의한 “장수명 주택” 중 1가지 적용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 7항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용
	친환경 건축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한 해당 적용대상의 구분을 적용하여 ㉠ 환경성능 부문, ㉡ 에너지 성능 부문, ㉢ 에너지 관리부문, ㉤ 신·재생에너지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적용대상의 구분에서 상향단계를 적용 ⇒ ㉠ 에너지 성능 부문 ㉤등급 적용 및 ㉤ 신·재생에너지 부문 ㉤등급 적용
	역사문화 보전	해당없음

구 분		건축계획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권장)	◦ 해당없음

3) 높이 계획

구분	용도지역	높이기준	비고
신설	준주거지역	90m이하(29층 이하)	-

라. 건축물 배치·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신설	건축한계선	획지	◦ 인접대지경계로부터 3m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신설	공공보행통로	획지 ◦ 공공보행통로 결정 : 폭 4.2m 이상 (석계로변 ~ 광운로 52) ◦ 결정 사유 : 주변지역 연계를 통한 가로활성화 유도	지역권 설정 ※지역권 설정 기간 :건축물 준속 기간으로 한정 (통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인 에게 24시간 상시개방)

2)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비오톱	비오톱보전등급향상	○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개별비오톱 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 생태자연도 3등급지역	·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
2.생태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서북측 영축산과 도로 및 주거지역 입지로 녹지 네트워크 단절된 상태	· 단지 내 조경녹지 계획(생태면적률 30.02%)	-
3.동식물상	등·식물상보호	-	· 도심지(대지)로 해당 사항 없음	-	-
4.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 보전	-	· 해당 사항 없음	-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5.토지이용	중립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조사	· 개발 제한 및 규제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6.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오염 발생하지 않음	-	-
7.지형지질	지형·지질영향 최소화	○	· 표고 25.0~30.0m, 평균 경사도 3.3° 의 안전한 평지 지형 (출입구에만 경사도 분포)	· 절토 및 성토공사로 부분적 지형변화 발생	-
8.물순환,수리·수문	자연물순환 유지	○	· 공공주택용지 내 조경녹지 계획	· 생태면적률 30.02%	-
9.수질	수질오염 방지	○	· 지표 수질(중랑천) 및 지하수질 현황 조사, 공사 중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 공사 중 수질저감 계획 수립 · 우수, 하수 처리방안 계획	-
10.바람	바람길 및 미기후 개선	○	· 서울기상대 기상현황 조사 분석 검토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 건축물 계획시 주풍향(북동풍) 고려 계획	-
11.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주거지 및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주거지로 온도가 높은 편	· 불투수포장비율을 최소화하고 투수포장 등을 적용하여 열환경 개선	-
12.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장 장비가동 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배출 영향	· 세륜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등 저감방안 계획	-
13.악취	악취공해 해결	-	· 해당 사항 없음	-	-
14.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난방,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계획지구 내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 절감, 녹지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
15.친환경적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 노원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16.에너지	에너지절약 /효율 극대화	○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
17.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공사시 소음·진동영향 예상 · 운영시 도로소음영향 예상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
18.경관	주변경관과의 조화	○	·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조성되어있음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건축물 외곽 조정식재 계획 → 가로녹시를 증가 ·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
19.휴식 및 여가공간	양질의 휴식, 여가공간 확보	○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부족 ·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 주민휴게시설 및 식재 등을 계획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20.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연평균 및 월별, 계절별 일조 시간 검토	· 지상 29층 이하 규모의 사업계획 수립, 일조권 침해 최소화	-
21.보행친화공간	보행친화형 도시 조성	-	· 보행자전용도로 등 미계획 하였으므로 미반영	-	-
22.전파장해	전파장해 영향 저감	-	· 해당사항 없음	-	-
23.인구	인구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사항 없음	-	-
24.주거	주거 환경을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사항 없음	-	-
25.산업	산업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사항 없음	-	-

3)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공공기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하는 공공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계획
- ※ 사업대상지의 구체적인 규모별 세대수 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세대수		전체 비율
			분양주택	장기전세주택	
합계		240	170	70	100.0
공공 주택	49 type	27	9	18	11.3
	59 type	117	100	17	48.7
	84 type	96	61	35	40.0

II.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변경)

②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월계동 380-1 일대	24,922.0	감) 284.0	24,638.0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변경 -면적 : 24,922.0㎡→24,638.0㎡ 감)284.0㎡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일부 제 척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4,922.0	감) 284.0	24,638.0	100.0	-
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24,922.0	감) 284.0	24,638.0	100.0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	노원구 월계동 383-42	준주거지역	284.0	503.0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광운대역세 권 장기전세 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일부 제척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획지 결정(변경)조서

가) 단위획지의 개발규모 : 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번호	도면 번호	지 번	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A-1	1	380-4	469	-	획지선 지정해제
		2	380-8	129	-	획지선 지정해제
		3	380-5	122	-	획지선 지정해제
		4	379-28	99	-	-
		5	379-39	252	-	획지선 지정해제
		6	379-29, 379-30, 379-31	297	공동개발 권장	동일소유
		7	379-40	198	-	획지선 지정해제
기정	A-2	1	379-32, 379-42	198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 유도
		2	379-43, 379-45	294	공동개발 권장	동일소유
		3	379-33, 379-34, 379-35	297	공동개발 권장	동일소유
		4	379-36, 379-46	185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 유도
기정	A-3	1	380-1, 382-2, 382-3, 382-4, 382-5, 382-7, 382-8, 382-9, 382-10, 382-11, 382-13, 85-1	2,153	획지선 지정	기건축
기정	A-4	1	379-19, 379-20	192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해소
		2	379-22	149	-	획지선 지정해제
		3	379-15	155	-	획지선 지정해제
		4	379-16	136	-	획지선 지정해제
		5	379-11	119	-	획지선 지정해제
		6	379-12	96	-	획지선 지정해제
		7	379-2, 379-8, 379-9	21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기정	A-5	1	379-17, 379-18, 379-23, 379-24	38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2	379-25, 379-49	258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 유도
		3	379-10, 379-13, 379-14	209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 유도

구분	가구 번호	도면 번호	지 번	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A-6	1	410-1, 410-5	404	공동개발 지정	기건축(동일소유)
		2	413-1	579	-	획지선 지정해제
		3	414-2	496	-	획지선 지정해제
폐지	A-8	1	383-42	284	-	광운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으로 구역에서 제척
기정		2	410-7, 410-8	665	공동개발 지정	기건축(동일소유)
기정	A-9	1	379-50, 379-59	12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과소필지 해소
		2	383-3	393	-	-
		3	383-5	172	-	-
		4	383-6	156	-	-
기정	A-10	1	383-8	159	-	-
		2	383-25	179	-	-
		3	383-9, 383-33, 383-34	180	공동개발 지정	맹지해소
		4	383-10	184	-	획지선 지정해제
		5	383-11, 383-12	228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 유도
		6	383-21, 383-22, 383-24, 383-36, 383-45	930	공동개발 지정	기건축
기정	A-11	1	383-14	188	-	-
		2	383-15	195	-	-
		3	383-19, 383-20	33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4	383-16	337	-	획지선 지정해제
		5	383-17, 383-39	15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과소필지해소
기정	A-12	1	378-65, 378-66	264	공동개발 지정	기건축(동일소유)
		2	387, 387-2, 387-3, 387-4, 387-7, 387-8, 387-9, 387-10, 390	1,021	획지선 지정	기건축(공동주택)
		3	391-1	481	-	획지선 지정해제
기정	A-13	1	409-12	236	-	획지선 지정해제
		2	383-30	362	-	획지선 지정해제
		3	383-28, 383-29	180	공동개발 지정	기건축(동일소유)
		4	383-26, 383-27	149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 유도
		5	383-4	178	-	획지선 지정해제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사 유	비 고
A-8	◦ 광운대역세권(월계동 383-42번지)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으로 구역에서 제척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 3)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 4)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1) 대지내 공지 : 변경없음
- 2) 대지내 통로 : 변경없음
- 3) 차량동선 : 변경없음

라.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2024년 제6차('2024.5.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제6차 도시계획 위원회	수정가결	○ 주동별 높이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해 스카이라인, 조망 및 일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높이계획 조정 검토	○ 대상지와 인접한 지역은 거리상 건축물 높이 조정에 따른 일조, 경관개선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건축물의 폭원을 조정을 통해 통경축을 확보하여 일조와 경관을 개선하였으며, 주변 기존 공동주택 및 노후주택의 개발 잠재력, 지구단위계획의 최고높이를 고려하여 단지 중심을 높이고 외곽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였음. ○ 통경축을 2.8m 추가 확보하였으며 대상지 북서측 조망 및 일조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반영
		○ 임대주택 평형별 세대수 계획은 임대주택 관련 주관 부서와 협의	○ 기존 심의(안) 임대주택 60㎡이하 29세대에서 35세대(증가 6세대) 계획하였으며 60㎡초과는 심의(안) 40세대에서 35세대(감소 5세대) 계획하였음.	반영
		○ 공공보행통로 계획의 실효성 재검토(공공보행통로 지정 시 계획 취지를 포함하여 결정)	○ 대상지 일대는 역세권 특성상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지 전면상가는 가로활성화 단절 구간이 발생하는 용도가 분포하고 있으며, 노후저밀 건축물로 확장성이 취약함. ○ 따라서, 대상지와 전면상가가 접하는 위치에 근린생활시설 배치 및 새로운 가로를 조성함으로써 기존 가로기능을 확장하여 전면상가의 정비를 유도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함으로써 향후 월계생활권, 광운대주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보행환경개선 및 가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다음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		
		- 5호 조합에 따른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및 바닥 보이드 공간 개선 검토	○ 기존 5호 조합에 엘리베이터 2대를 3대로 개선하여 동선의 혼잡을 개선하였으며, 보이드공간을 설비공간으로 활용 및 최소화하였음.	반영
		- 환기 등 주거환경 개선 검토	○ 탑상형태의 경우 주동 특성상 환기 등의 불가피한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향후 구조 및 설비검토계획에 따라 주동 평면 조정 및 환기시스템 설치 등을 검토 후 단위세대평면을 개선하여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시 협의하겠음.	향후 반영
		- 서측 대지 내 통로 확폭 방안 검토	○ 공공보행통로 폭원은 기존 3.0m에서 4.2m이상 확폭하고 주변 녹지와 연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음.	반영
		- 입면계획 개선 검토	○ 현재 입면계획은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향후 주무부서·관련부서 협의 및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시 면밀하게 검토·협의토록 하겠음.	향후 반영

III.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광운대역세권(월계동 383-40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변경)
2.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5.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6. 지구단위계획 총괄도(기정/변경)

■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변경)
2.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없음)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도서 : 생략

- 상위계획 및 계획의 개요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조서
- 결정도
- 계획설명서
- 환경성 검토서
- 교통성 검토서
- 경관성 검토서
-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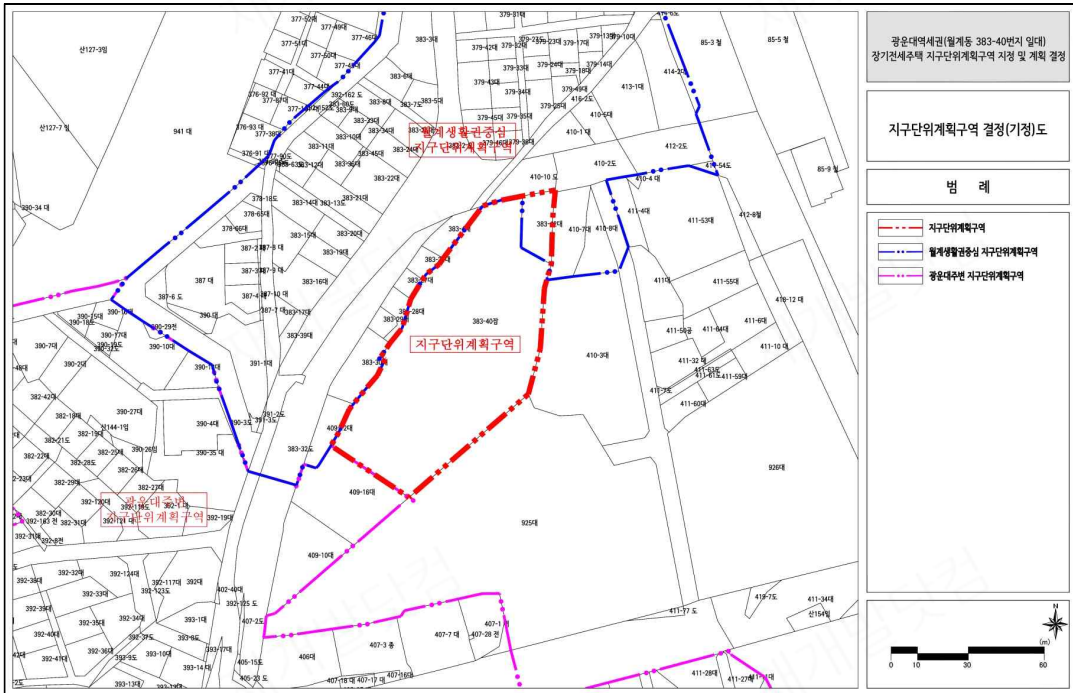
V.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60), 노원구 도시관리과(☎02-2116-3868)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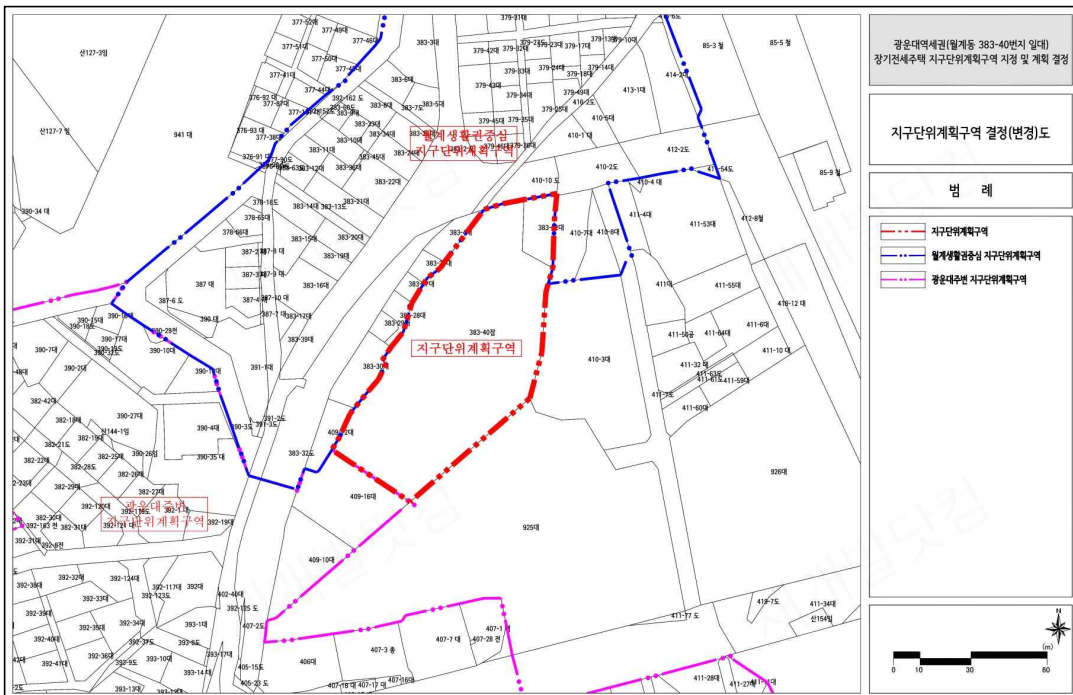
[붙임]

1) 광운대역세권(월계동 383-40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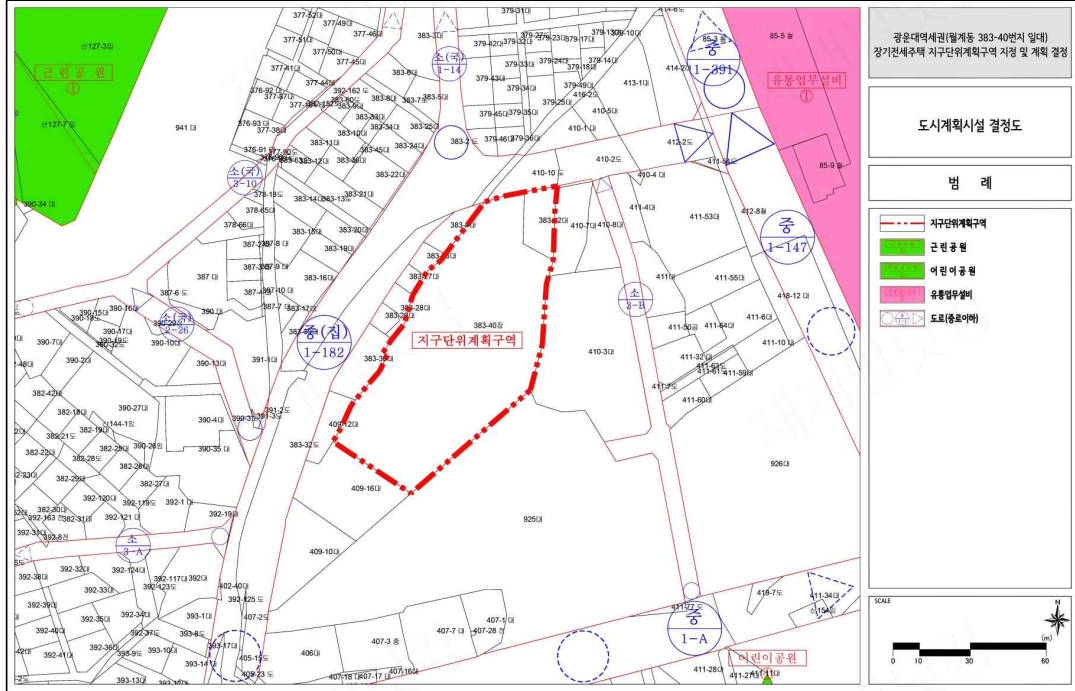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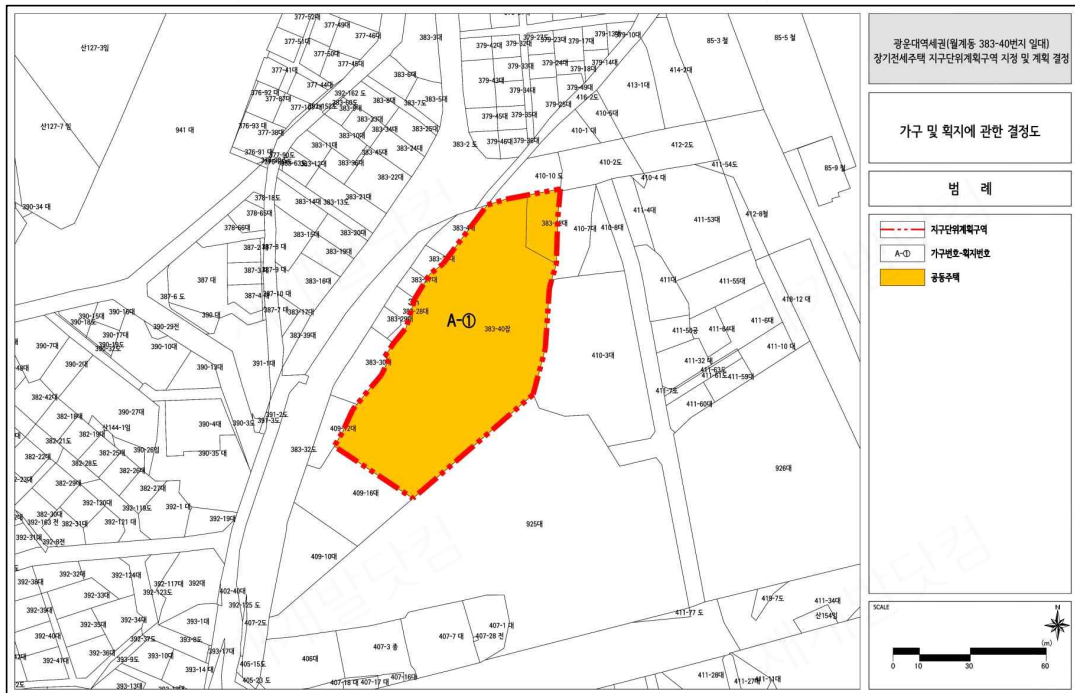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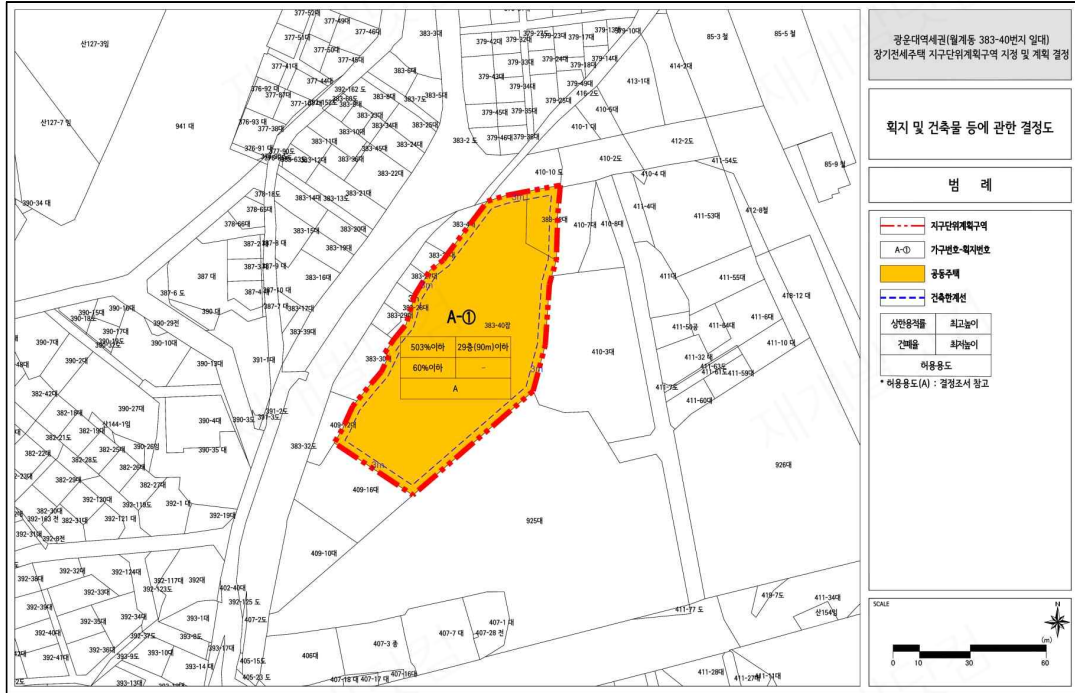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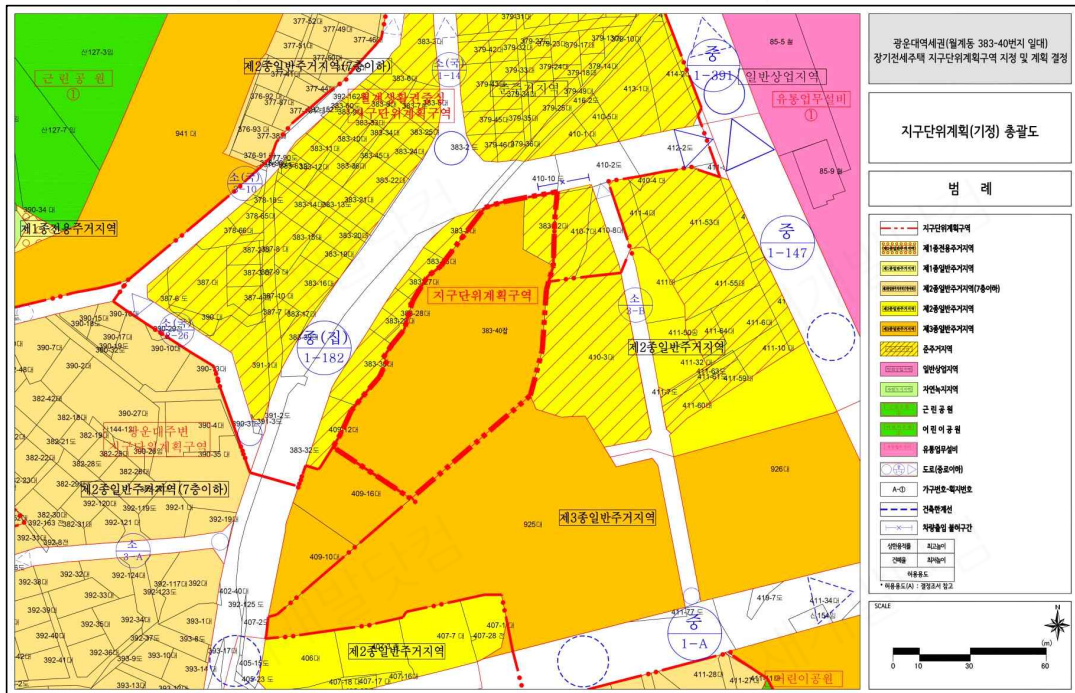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총괄도(기정)



2)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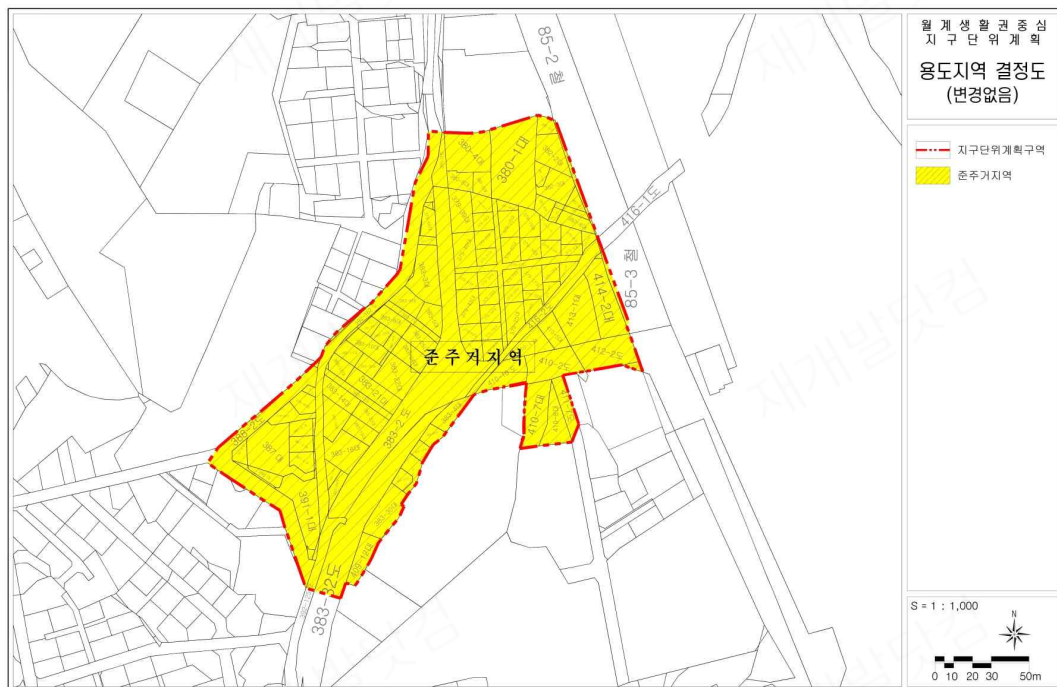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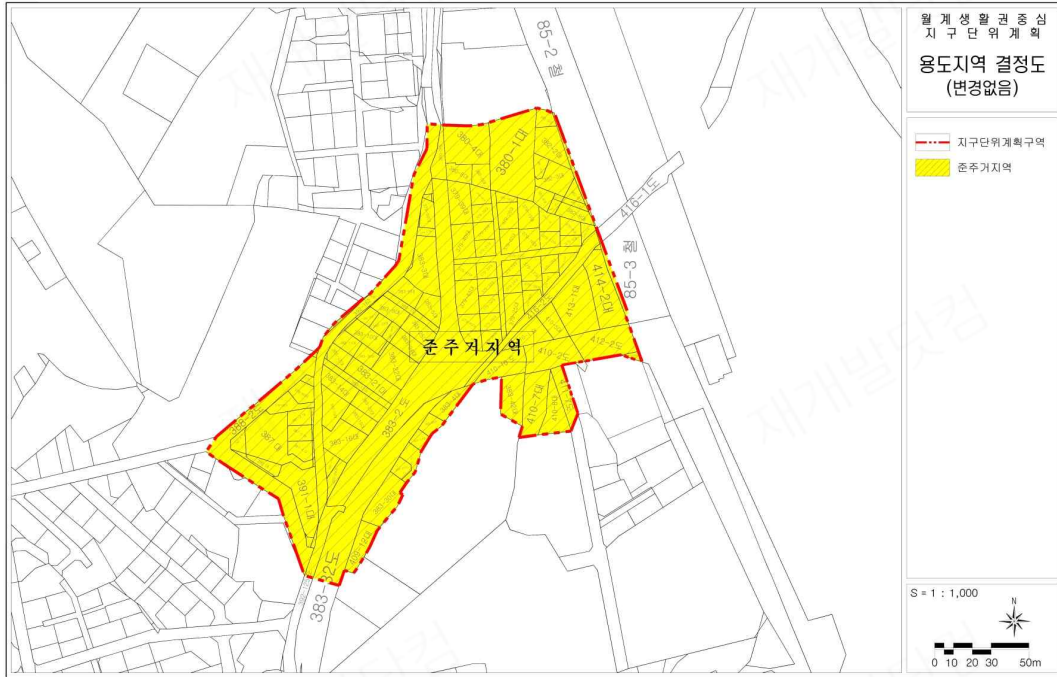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없음)

